

제294회미추홀구의회 (임시회)
2026.3.17.(화)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황숙경 의원 대표 발의】



의회운영위원회
[전문위원 오세진]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검토경위

○ 발 의 자: 황숙경 의원 외 4명

※ (공동발의자) 김재원, 양정희, 김태계, 정락재 의원

○ 발의일자: 2026. 3. 10.

○ 심사일자: 2026. 3. 17.

2. 제안이유

○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·법률
고문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으로 공정성 제고와 연임에 따른 특혜
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적
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사항(안 제2조제2항)
- (임기) 2년 →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4. 관련법령 등

○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(2025.12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,
 - 현행 조례상 연임 제한 규정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직무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 문제를 해결하고,
 - 신규 전문가들의 위촉 기회를 차단하던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인력 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.
- 따라서, 상위 기관의 권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투명성을 높이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